

서울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2012467(본소), 2021나2012474(반소) 판결 [지체상금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호, 이계진, 이재혁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최형락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2. 1.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가합109429(본소), 2020
가합100091(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83,7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783,7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 중 아래 제2항에 기재한 것 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18행의 “신축공사 관하여”를 “신축공사에 관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6, 7행의 “K”를 “J”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12, 13행의 “지체상금 7억 1,820만 원{= 계약금액 57억 원 x 지체상금율

1/1000 x 지체일수 126일(2019. 2. 1. ~ 2019. 6. 7.))” 부분을 “지체상금 7억 2,390만 원{= 계약금액 57억 원 x 지체상금을 1/1000 x 지체일수 127일(2019. 2. 1. ~ 2019. 6. 7.))”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6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공사가” 부분부터 같은 쪽 8행까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맨 마지막 행의 “직접 지급”을 “직접 지급”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쪽 5행의 “곧바로 바로”를 “곧바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쪽 12,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지체상금 7억 2,39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70%의 범위에서 5억 673만 원(= 7억 2,390만 원 × 70%)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5쪽 15, 16행의 “5억 274만 원”을 “5억 673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2쪽 18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3쪽 17행부터 제24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58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8. 10. 23.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2019. 2. 26. X(Y)에게 16,4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가 2017. 9. 4. AB(주)에 입금한 2억 7,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체 총액 중 피고가 원고 등에게 다시 이체하여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2,455,502,090원(= 원고 자인 금액 2,164,102,090원 + 추가 인정금액 291,400,000원(= 270,000,000원 + 5,000,000원 + 16,4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제24쪽 19행부터 제25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D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정산시 일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D 공사가 준공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D 공사의 공사대금

57억 원에 대한 10%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5억 7,000만 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D 공사의 공사대금 57억 원에 대한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원고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위 5억 7,000만 원은 원고 이체 총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피고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5억 7,000만 원 중 이 사건 D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54억 1,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5억 4,150만 원(= 5,415,000,000원 x 0.1)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 2,850만 원(= 5억 7,000만 원 - 5억 4,150만 원)도 원고가 부가가치세 5억 7,000만 원을 환급받은 이상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25쪽 맨 마지막 행부터 제26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D 공사대금으로 4,308,268,990원(= 원고 이체 총액 10,193,385,600원 - 제3자에게 지급된 금원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액 259,614,520원 - 부가가치세로 지급된 금액 5억 7,000만 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2,455,502,090원 - N 기성금 26억 원)을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 제27쪽 12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D 공사대금으로 4,308,268,990원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 D 해지통보 이후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D 공사대금 채무 중 445,930,082원이 소멸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660,800,928원(= 54억 1,500만 원 - 4,308,268,990원 - 445,930,082원)이 남는다.』

○ 제1심판결 제28쪽 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체 총액에서 이 사건 N 공사대금으로 26억 원이 특정되어 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N 공사의 기성금으로 26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N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비가 총 1,625,013,758원(= 공사비, 경비, 일반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공사금액 1,256,607,278원 + 철거공사비 108,406,480원 + 부가가치세 260,000,000원)임을 자인하고』

○ 제1심판결 제28쪽 20행의 “615,900,928원”을 “660,800,928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9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1. 11. 30. 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법원에서 2회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에게 충분한 입증기회가 부여된 후 변론이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안승훈, 판사 구태희